

# 등급분류위원회규정

2016. 02. 18 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설치근거)** 의무 등급 분류 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)는 대한장애인당구 협회(이하 “협회”이라 칭한다)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 등급 분류 위원회로 설치 운영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본 협회 정관 제37조의 위원회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 질문에 응하고 또한 위촉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, 심의 또는 처리한다.

1. 의무등급분류위원회는 협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 및 신규선수 등급규정
2. 의무등급분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
3. 의무등급분류위원 양성에 관한 업무
4. 의무등급분류연구에 관한 사항
5.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건의

**제4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)**

①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) 위 원 장 1인

나) 위 원 3~5인 이내

다) 간 사 1인 (사무국장 또는 협회 직원)

②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- 단 위원장은 등급분류 자격 소지자 혹은 물리치료 및 재활의학 전공자로 둔다.

**제5조 (회의)**

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.

③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6조 (임기)

①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③본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분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적으로 해촉된다.

### 제7조 (등급분류 재심청구)

①등급분류는 매년 선수등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협회의 의무등급 분류사의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국제등급분류사의 등급을 받아서 제출한다.

② 상위등급분류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 및 절차는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분류서를 받아 제출한다.

## 부 칙 ('16. 02. 18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날로부터 시행한다.